

문서번호	시설안전팀-682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7.02.03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팀장직무대리	건설안전본부장	사장
			02/03
김상현	김주호	김승호	박현출
협 조	차장 임계근		
감 사	감사실	감사실	

'17년 가락시장 소방계획서

2017.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시설안전팀

가락시장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7년 가락시장 소방계획서

2017.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시설안전팀

'17년 가락시장 소방계획서(요지)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 작성기준

-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계획서」 양식서

□ 계획수립 주기 : 매년

□ 주요 내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6항】

업무 내용	관련 조항	소방계획서
1.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칙 제14조의4	제4장 16절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법 제20조 11항	제3장 10절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10조	제2장 8절
4. 소방훈련 및 교육	법 제22조	제3장 11절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제2장 8절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제2장 8절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4장, 제5장

목 차

일반계획			
장	절	목 차 명	페이지
제1장		일반사항	1
	1.0	목적	1
	2.0	적용근거	1
	3.0	적용범위	1
	4.0	책임과 권한	1
제2장		예방 및 완화	2
	5.0	일반현황	2
	6.0	화재예방 및 홍보	3
	7.0	자체점검	3
	8.0	일상적 안전관리	3
제3장		대 비	4
	9.0	소방안전관리위원회	4
	10.0	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	5
	11.0	교육 및 훈련	7
	12.0	자체평가 및 개선	8
제4장		대 응	8
	13.0	비상연락	8
	14.0	지휘통제	8
	15.0	초기대응	9
	16.0	피난(유도)	9
	17.0	비상대응계획 및 자위소방활동요령 배부	9
제5장		복 구	10
	18.0	피해복구계획	10
	19.0	피해복구(단기/장기복구)	10
	20.0	피해복구 지원	11

부록 A 관리 · 대응 계획서

[예방]	A-1-1	건축/시설현황
	A-1-2	소방·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A-1-3	법인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A-2-1	자체점검 계획
	A-2-2	일상적 안전관리
	A-2-4	위험작업 허가서
	A-2-5	소방시설[공사/정비]기록부
[대비]	A-3-1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A-4-1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편성표
	A-5-1	교육 · 훈련 및 자체평가 계획
	A-5-2	교육 · 훈련 및 자체평가 결과
[복구]	A-6-1	화재피해 복구계획

부록 B 관리 · 대응 절차서

[대비]	B-1	교육 · 훈련 및 자체평가 절차
[대응]	B-2	비상대응계획 수립절차
	B-3	자위소방 활동요령
	B-4	피난계획 수립절차
	B-5	피난안내도 작성방법

참고자료

1	소방훈련 시나리오 구성 체크리스트
2	화재시 행동요령
3	자위소방대 업무흐름(Flow Chart)
4	소방계획서 작성근거 및 별첨
5	법인 소방계획서

부록

'17년 가락시장 소방계획서

제1장 일반사항

1.0 목 적

이 계획의 목적은 [가락시장]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0 적용근거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3.0 적용범위

- 3.1 이 계획은 화재로 인한 재난의 예방·완화, 대비, 대응, 복구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 3.2 이 계획은 [가락시장]의 관계인(거주자 및 근무자, 유통인)에 대해 적용된다.

4.0 책임과 권한

명 칭	주요 책임과 권한
[대표/기관장] 사 장	■ 소방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관리책임자] 본부장	■ 소방계획을 수립·실행하기 위한 관리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안전관리자] 팀장/차장	■ 소방계획을 수립·실행에 대한 실무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근무자] 구 성 원	■ 소방계획의 실행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2장 예방 및 완화

5.0 일반현황

5.1 소방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현황 및 사전정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건축물 일반(관리)현황
- (2)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 시설의 현황
- (3)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 (6) 방화구획, 제연구획 등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 (7)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9)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 (13) 비상연락처 현황
- (14)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5.2 건축물 현황 등은 [부록A-1-1 “건축/시설현황”], [부록A-1-2 “소방·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참고한다.

6.0 화재예방 및 홍보

6.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화재예방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6.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활동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 (1) [화재 예방 및 홍보자료 배부]
- (2) [홍보 콘텐츠 활용(포스터, 현수막, 영상물, 콘텐츠 등)]
- (3) [화재 및 인명안전 체험행사]
- (4) [기타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활동]

6.3 우리 기관의 소방안전 환경은 다음과 같이 조성·운영한다.

부착 또는 설치물		부착 또는 설치장소	내 용
홍 보 물	현수막	옥외난로 사용지역	“옥외난로 불법연료 사용금지”
	플래카드	중앙로 게시대	“불나는곳 따로없고 불조심 너나없다”
	입간판	공사 로비	“불나는곳 따로없고 불조심 너나없다”
기 타 홍보물		캠페인 시 배포	화재예방
불조심 홍보방송		차량 순찰 방송	화재예방

※ 법인 소방안전관련 현수막 게시 별도 실시

7.0 자체점검

- 7.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7.2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부록A-2-1 “자체점검 계획”]을 작성·관리한다.

8.0 일상적 안전관리

- 8.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완화를 위해 일상적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8.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일상적 안전관리 활동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가연물 및 화기(점화원) 취급관리]
 - (2) [소방 및 인명안전시설의 유지·관리]
 - (3)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 (4) [전기, 가스, 위험물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 (5)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8.3 일상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부록A-2-2 “일상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부록 A-2-3.(예방) 일상점검 및 안전관리 일정표] ,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록A-2-4 "위험작업 허가서"]를 각각 작성·관리한다.

제3장 대 비

9.0 소방안전관리위원회

9.1 소방 등 재난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의결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1) [위원장 : 기관장](재난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건설안전본부장)
- (2) [간사 : 시설안전팀장]
- (3) [위원 : 11명](재난안전관리위원회 : 10명)

9.2 소방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화재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
- (2)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3) [기타 소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3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록A-3-1의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작성·관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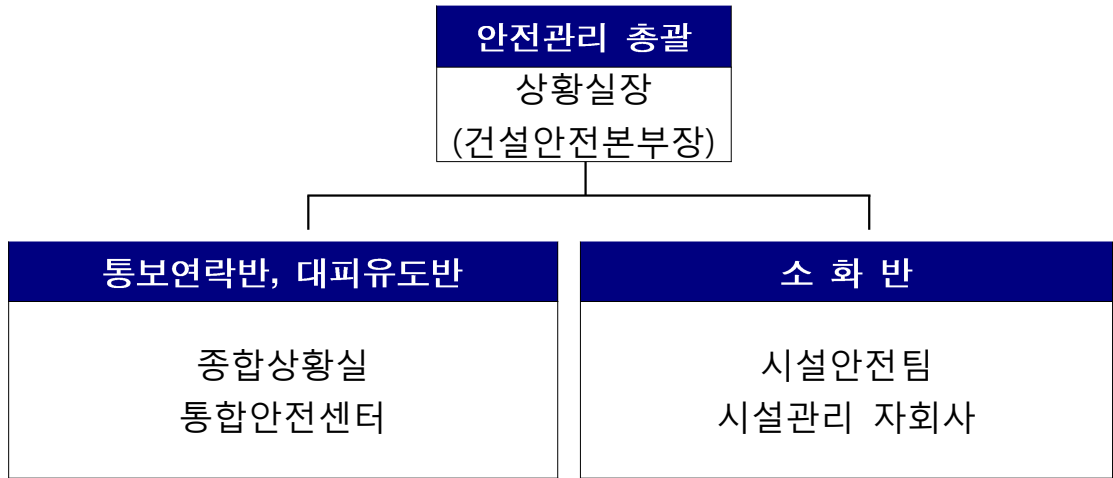
10.0 자위소방대 조직 및 운영

10.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자위소방조직을 구성·운영 한다.

주간 상시 근무 시 : 총원 349명



야간, 휴일 근무 시 : 총원 17명



※ 각 법인 자위소방대 별도 조직

10.2 자위소방조직은 화재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화재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 (2)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 (3) [기타 인명 ·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 (4) [화재진압활동 중 소방관서 지원 및 협조]

10.3 자위소방조직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임 무
대 장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운영한다.
부 대 장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
지 휘 반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 119신고 등 관계기관 연락
복 구 반	피해시설물 응급복구 및 안전점검 등을 수행
구 호 반	인적, 물적 피해 상황 조사 및 확산 방지, 구조,구급 업무 지원
경 계 반	유통인,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 및 시장 질서 업무 수행

10.4 자위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대원을 식별할 수 있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10.5 자위소방조직을 구성하고 임무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부록A-4-1의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편성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11.0 교육 및 훈련

11.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비상대응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1.2 교육 및 훈련은 공사 직원 및 법인, 조합, 단체 등 유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 및 도매법인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11.3 소방교육은 연2회 이상 실시하며,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한다.

회차	일자	내용	비고
1	1월	화재예방 교육 실시	
2	4월	화재 대피 및 소방교육 실시	
3	5월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4	8월	소방종합훈련 실시	
5	10월	화재 시 대피요령 실시	
6	11월	소화기 사용 등 소방훈련 실시	
7	12월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 법인 등 유통인 합동 소방훈련 및 캠페인 별도 실시

11.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1.5 교육·훈련 B는 교육·훈련 실시 전 [부록 A-5-1의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계획”]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부록 B-1의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절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12.0 자체평가 및 개선

- 12.1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미비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12.2 교육 · 훈련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기록을 작성 · 관리한다.
- (1) [교육 · 훈련 계획 및 결과보고]
 - (2) [교육 · 훈련 참석자 명단 및 활동기록(사진, 영상 등)]
 - (3) [교육 · 훈련 항목별 평가 체크리스트 및 측정결과]
 - (4) [교육 · 훈련 실시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
- 12.3 교육 · 훈련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록 A-5-2의 “교육 · 훈련 및 자체평가 결과”]를 작성 · 관리해야 하며, [부록 B-1의 “교육 · 훈련 및 자체평가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제4장 대응

13.0 비상연락

- 13.1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전파 및 신고체계 확립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 운영한다.
- 13.2 비상연락 절차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비상연락처의 조사 및 작성]
 - (2) [비상연락 수립절차 및 방법]
 - (3) [비상연락 체계의 정기적인 업데이트]
 - (4) [기타 비상연락체계에 필요한 사항]
- ※ 법인 및 조합, 단체 비상연락처 조사 및 작성

14.0 지휘 · 통제

- 14.1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화재현장의 원활한 비상대응을 위해 지휘 통제 체계를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14.2 지휘 · 통제 절차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비상상황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향 결정]
- (2) [자위소방조직 및 활동에 대한 지휘 · 통제]
- (3) [관 소방대와의 소방활동에 대한 협력방안]
- (4) [기타 행정, 자원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

15.0 초기대응

15.1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필요한 초기대응절차를 수립 · 시행한다.

15.2 초기대응절차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초기소화장비를 활용한 진압절차]
- (2) [출혈, 화상, 골절, CPR, AED 사용 등 응급구조 절차]
- (3) [화재의 확산방지, 위험시설의 정지 및 중요물품 반출절차]
- (4) [기타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능 절차]

16.0 피난(유도)

16.1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대상물의 거주자, 근무자 등 유통인, 방문자를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피난(유도)시킨다.

16.2 피난(유도)절차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피난 대상 인원]
- (2) [화재경보 및 피난방법]
- (3) [피난유도절차 및 요령]
- (4) [재집결 장소 및 운영절차]

16.3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피난안내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록 B-4의 “피난계획 수립절차”] 및 [부록 B-5의 “피난안내도 작성방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17.0 비상대응계획 및 자위소방활동요령의 배부

17.1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 및 자위소방

활동을 위한 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여 배부할 수 있다.

17.2 비상대응계획 및 자위소방활동요령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비상연락 절차 및 요령(비상연락망)]
- (2) [초기대응(초기소화, 응급구조, 방호안전)절차 및 요령]
- (3) [피난(유도)절차 및 요령(재해약자를 포함한다.)]
- (4) [기타 자위소방활동 및 비상대응에 필요한 사항]

17.3 비상대응계획 및 자위소방활동요령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부록 B-2의 “비상대응계획 수립절차”] 및 [부록 B-3의 “자위소방활동요령”]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복 구

18.0 피해복구 계획

18.1 화재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18.2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계획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화재발생 개요, 원인 및 피해상황]
- (2) [피해복구 조직(TF) 구성 및 업무분담 계획]
- (3) [화재현장 복구(Clean-Up) 및 시설복구 계획]
- (4) [시설안전점검 및 피해보상계획]
- (5) [복구 예산 및 자원 집행계획]

18.3 화재로 인한 재난의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록 A-7-1의 “화재피해 복구계획”]을 작성 · 관리한다.

19.0 피해복구(단기/장기복구)

19.1 화재 등 재난대응 또는 발생 직후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단기 복구 활동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화재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 (2) [화재현장 복구(Clean-Up)]

- (3) [시설 정비 및 보수절차]
- (4) [임시 숙소 및 영업장 마련]

19.2 화재 등 재난대응 또는 발생 직후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장기 복구 활동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 (2) [법률 상담 및 재정 지원]
- (3) [기반시설 복원 및 안전진단]
- (4) [화재보험처리 및 피해보상]

20.0 피해복구 지원

20.1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피해 복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거나 지원기관으로부터 복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 피해복구 지원항목 및 내용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1) [구호물품 지원 등 생활 지원]
- (2) [생계곤란자 긴급지원]
- (3) [의사상자 보호]
- (4) [재해구호비 지원]
- (5) [직원의 재해부조금 지원]
- (6) [화재보험 및 가지급금 지급]
- (7) [화상 및 정신 · 심리치료 지원]
- (8) [화재손실에 대한 세제 지원(국세, 지방세)]
- (9) [전기, 가스 등 안전시설점검 및 복구지원]
- (10) [화재피해 유통인 지원]

- 따로붙임
1. 피난계획도 1부
 2. 소방시설 동별 현황관리카드 1부
 3.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 1부
 4. 도매권역 소방시설 현황표 1부(용량초과로 부서계시판 게시)
 5. 가락몰 소방시설 현황표 1부(용량초과로 부서계시판 게시)
 6. 소방시설 배치도 1부(용량초과로 부서계시판 게시)
 7. 소방계획서 부록 1부(용량초과로 부서계시판 게시). 끝.